#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양경숙·송영길·황운하

양정숙 · 오영훈 · 박성준

홍성국 · 김영호 · 조오섭

맹성규 · 임종성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하여야 행위 자와 피해자간 분리가 완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면접 교섭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안전 보호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며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제9조의2 삭제,

제40조제1항제1호의2 ·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65조 신설).

#### 법률 제 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체포 및 범죄수사."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제5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7조(종전의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를 삭제한다.

제6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조치)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u>가정폭력</u>	1 <u>가정폭력</u>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	행위자의 체포 및 범죄수사.
<u> 죄수사</u> <후단 신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
	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u>&lt;삭 제&gt;</u>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생 략) <신 설>
- 2. ~ 8. (생략) ② ~ ⑥ (생략)
-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2. (생략) <신설>

3. · 4. (생략) ② ~ ⑥ (생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1의2.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
접교섭권행사 제한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제
<u>한</u>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

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

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

제65조(과태료) (생 략)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 | <삭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 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 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 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 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현행 제65조와 같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제67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 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 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삭 제>